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13 선고 2021가단51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9. K

변 론 종 결 2022. 9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, 피고 D, 피고 E은 연대하여 157,325,033원 및 그 중 73,878,291원에 대하여 2005. 3.

15.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

나. 피고 C, 피고 D,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1) 피고 F, 피고 G, 피고 H는 각 24,203,851원 및 그 중 11,365,890원에 대하여 2005. 3. 15.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 2) 피고 I은 14,522,310원 및 그 중 6,819,534원에 대하여 2005. 3. 15.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 3) 피고 K은 9,681,540원 및 그 중 4,546,356원에 대하여 2005. 3. 15.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

다. 피고 J는, 피고 C, 피고 D, 피고 E, 피고 F, 피고 G, 피고 H, 피고 I, 피고 K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157,325,033원 및 그 중 73,878,291원에 대하여 2005. 3. 15.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

라. 피고 C은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. 3. 24.부터 2000. 4. 22.까지 연 14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

마.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라.항 기재 금원 중, 1) 피고 D은 6,923,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. 3. 24.부터 2000. 4. 22.까지 연 14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 2) 피고 F, 피고 G, 피고 H는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각 4,615,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. 3. 24.부터 2000. 4. 22.까지 연 14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 3) 피고 I은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2,769,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. 3. 24.부터 2000. 4. 22.까지 연 14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 4) 피고 K은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1,846,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. 3. 24.부터 2000. 4. 22.까지 연 14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

바. 피고 J는, 피고 C, 피고 D, 피고 F, 피고 G, 피고 H, 피고 I, 피고 K와 연대하여 위 라.항 기재 금원 중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. 3. 24.부터 2000. 4. 22.까지 연 14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9%의,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, 피고 D,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,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 피고 C, 피고 D, 피고 E: 다툼 없는 사실나머지 피고들: 갑 1호증 내지 3호증, 을라 1호증, 을마 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각 이행(상품판매대금지급)보증보험계약자로서 주문 가.항 및 라.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피고 D, 피고 E, 망 L, 망 M는 주문 가.항 기재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, 망 L, 망 M는 주문 라.항 기재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, 별지 기재와 같이 망 L은 2014. 1. 10.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D 및 피고 F, 피고 I, 피고 K, 피고 G, 피고 H가 있고, 망 M는 2011. 7. 30.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J(공동상속인 N, O은 상속포기하였다)가 있고, 그 중 피고 F, 피고 I, 피고 K, 피고 G, 피고 H와 피고 J가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었으므로, 피고 D, 피고 E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주문 가.항 기재 금원, 피고 F, 피고 I, 피고 K, 피고 G, 피고 H는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주문 나.항 및 마.2)3)4)항 기재 각 금원, 피고 D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인 주문 마.1)항 기재 금원, 피고 J는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다.항 및 바.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

주문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범석

별지